

한-EU 동등성 인정 협정문(EU 측 서신)

박수진 국장님 귀하

2015년 2월 1일부터 EU와 한국은 각각의 유기 생산 규정과 관리 시스템에 따라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왔습니다.

EU 집행위원회 규정 (EC) No 1235/2008¹⁾ 제8조제4항에 따라 EU는 초기 3년간 한국에 대하여 동등성을 인정하였습니다. 이 인정은 2018년 1월 31일 만료될 것입니다.

이 동등성 인정기간의 연장을 고려하기 위해, EU 집행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 규정 (EC) No 834/2007²⁾과 (EC) No 1235/2008에 명시된 조건들이 계속 충족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.

검토 결과, 한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은 기한 없이 연장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규정 (EC) No 1235/2008의 부속서 III이 개정되었습니다.³⁾

감사합니다.

María Angeles BENITEZ SALAS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총국 부총국장

-
- 1) 제 3국으로부터의 유기농 제품 수입을 위한 준비와 관련된 EU 집행위원회 규정 (EC) No 834/2007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명시하는 2008년 12월 8일 집행위원회 규정 (EC) No 1235/2008 (OJ L 334, 12.12.2008, p. 25).
 - 2) 유기제품의 생산 및 표시제도와 (EEC) No 2092/91 철폐에 관한 2007년 6월 28일 이사회 규정 (EC) No 834/2007과 (OJ L 189, 20.7.2007, p. 1)
 - 3) 제 3국으로부터의 유기농 제품 수입을 위한 절차와 관련된 이사회 규정 (EC) No 834/2007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명시하는 규정 (EC) No 1235/2008을 개정 및 정정하는 2017년 12월 14일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 (EU) 2017/2329 (OJ L 333, 15.12.2017, p. 29)